

해양법상 해양과학조사제도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법

김호춘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Legal Regime of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Law of the Sea and Korea's Marine Scientific Research Law

I. 海洋科學調查의 意義

해양과학조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며,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어업생물을 과도하게 어획하지 않고 적정 수준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하여 오직 그 어종의 현존량과 가입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해저의 석유 개발은 유정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지질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파랑이나 해류 및 조류, 해저지형,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종류의 물질이 해양과 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만 해양환경의 보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¹⁾

이와 같이 해양과학조사는 해양물리학, 해양화학, 해양생물학, 해양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실험적인 작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해양고고학 및 자원 탐사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그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더욱이, 군사상의 목적으로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동원하는 많은 해양과학조사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의 개념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된다.²⁾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서 생물·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에 직접 관련되는 조사 활동 및 대륙붕 굴착작업에 대하여는 연안국의 동의보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5항 a 및 b호)³⁾ 그 뿐만 아니라 제240조의 일반원칙에서 평화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범주에는 순수한 학문적인 목적만이 포함되고, 응용분야로서 상업목적이나 군사목적의 활동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조사활동의 공간적 범위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海底面, 下層土, 上部水域 및 隣接人氣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

1) R. R. Churchill · A.V L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Press, 1999, p. 254

2) Turio Treves, "Marine Research",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11,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89, p. 207

3) 이에 대하여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56조 1항과 제77조에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의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1항은 「“海洋科學調查”라 함은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느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II. 1958년 제네바協約上 海洋科學調査制度

20세기 중반까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았고, 1982년의 유엔 해양법협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도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은 해양법 규범으로 입법되지 않았다. 이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海洋科學調査活動은 국가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배적인 관념과 그러한 활동 자체가 극히 희소하였다는 상황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자원개발과 군사목적의 해양조사활동은 현저히 증가함과 동시에 그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더욱 고조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국제 사회로 하여금 해양과학조사활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58년에 최초로 채택된 성문 해양법전인 제네바협약체제에서도 해양과학조사는 공해이용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즉, 공해협약 제2조가 규정한 공해자유의 내용중에 과학조사의 자유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동 조항의 공해자유의 내용은 예시적 열거인 것으로 명시되었고 ILC의 초안에 대한 Commentary에서는 동 조항이 예시적 열거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열거되지 않은 자유로 특히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지적한 바도 있다.⁵⁾ 실질적으로 해양과학조사는 공해에서 다수의 선진국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어느 국가로부터도 그 활동을 방해받지 않았다.

가. 영해(領海)와 내수(內水)에 있어서의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査)

1958년 Geneva협약에서 해양조사 활동의 제한은, 영해(領海)와 대륙붕(人陸棚)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에 전속된 영역이므로 이곳에서 제3국의 선박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뿐이다. 그러므로 타국 영해내(領海內)에서의 해양의 과학적 조사 활동은 그 연안국(沿岸國)의 동의가 있는 구역에 한해서 가능하며 또 연안국이 설정한 어떠한 조건도 준수하여야만 할 것이다.

무해통항권을 행사하여 타국의 영해를 항행(航行)하는 선박이 영해구역 통과에 부수 하여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는 1958년 [영해협약(領海協約)]에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19조 2항 J호나 제40조와 같은 명시적 금지조항이 없었으므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영해협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국은 그 국내 법령에 의거, 이러한 활동을 얼마든지 제한·금지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연안국의 내수(內水: internal water)에 있어서의 과학조사활동은 더욱 더 연안국의 주권적(主權的) 제한(制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대륙붕(人陸棚)에서의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査)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1958년 [대륙붕 협약(人陸棚 協約)]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그 제1항에서는,

5)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부산 : 효성출판사), 1999, p. 850.

대륙붕의 탐사와 천연자원의 개발은 ... 공표(公表)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초적 해양학적 조사 및 기타 과학적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 와서는 안된다.

라고 개괄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기본적 보장원칙은 제8항에서 많이 제한되고 있다. 즉,

대륙붕(大陸棚)에 관한 조사활동(調查活動)으로서 대륙붕에서 수행(遂行)되는 것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나 그 연안국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연안국은 자격 있는 기관이 대륙붕의 물리학적(物理學的) 또는 생물학적(生物學的) 특성에 대한 순수한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안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연안국은 그 조사에 참여하거나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지며 또 어느 경우에나 그 조사의 결과는 공표되어야만 한다.

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대륙붕에 대한 “순수목적(純粹目的)”의 조사나 “응용목적(應用目的)”의 조사나 모두 연안국(沿岸國)의 사전동의(事前同意)가 필요하지만, “순수한 목적”의 조사의 경우에 연안국의 참여·탐사결과의 공표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통상적(通常的)으로”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제5조 8항의 입법의도(立法意圖)는 대체로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조문의 표현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우선 “대륙붕에 관한 조사활동으로서 대륙붕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한가지 해석은, 해양의 과학적 조사로서 대륙붕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물리적으로 대륙붕의 해저(海底), 해상(海上)에서 수행되는 것만이 연안국 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이와는 달리, 그것이 해저, 해상에서 수행되거나 또는 상층수역에서 수행되거나 대륙붕에 관련된 것이면 모두 이에 해당되고 또 대륙붕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거나 대륙붕의 해저, 해상에서 수행되는 모든 조사활동도 이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의 해석이 올당한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이 조항을 위한 입법과정의 정황적 자료(travaux préparatoires)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륙붕 협약당사국들 사이의 국가관행(國家慣行)을 살피고(参考)하면 후자의 해석에 대체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⁶⁾ 어느 쪽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대륙붕에 관련되지 않고 대륙붕의 상층수역(上層水域)에서 수행되는 과학조사 활동은 연안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조사활동은 기본적으로 공해자유(公海自由)의 내용 중에 포함되고 있는 해양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권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純粹)한 목적(目的)”의 과학적 조사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

순수(純粹)한 목적의 조사와 응용적(應用的) 목적의 조사를 실체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용

6) A.H.A. Soons,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The Hague, 1982), pp. 66-82.

이하지 않다. 본래 "순수한" 목적에서 기획되고 시작된 과학적 조사도 일단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분석되고 나면 그 결론은 응용면(應用面)에 유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순수목적의 과학적 조사에 동의를 부여해야 할 "통상적(通常的)"인 상황의 범위에 관해서도 제5조 8항에는 아무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격(資格) 있는" 연구기관이란 어떤 것인 가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대륙붕협약 제1조에서 규정하는 대륙붕의 정의에서 대륙붕의 외적범위가 명확히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은 제5조 8항의 해석에 기본적인 난점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어업수역(漁業水域)에서의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查)

1958년, 4개의 해양법 협약이 채택된 이래 나타나게 된 어업보존수역(漁業保存水域)의 개념은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을 규제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어왔다.

어업보존수역(漁業保存水域)을 설정한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그들의 배타적 어업수역내의 조사활동에서 어류를 채취(採取)하는 한, 어업에 관련된 조사활동을 규제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안국의 주장은 명백한 반대를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런 종류의 과학적 조사활동 규제는 이제 관습국제법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류를 채취하지 않는 과학적 조사활동을 규제하는 주장은 적어도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海洋法會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III.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상(海洋法協約上)의 해양과학조사

200해리 경제수역(經濟水域)의 개념과 대륙붕(大陸棚)의 외측한계(外側限界)의 확장, 군도수역제도(群島水域制度) 등을 등장시킨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는 전반적으로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에 관한 보다 강화된 규제의 추세를 가져왔다. 이 회의를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주장을 일관해서 강조하였는 바, 그 원인은 첫째로 200해리 경제수역을 비롯한 새롭게 정의된 확장된 관할수역에서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의 규제권한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들 확장된 수역에서의 주권적 관할권의 실효성을 상실된다고 개도국들이 믿었던 때문이고 특히 군사 강대국들의 해양조사활동은 간첩활동(間諜活動)으로 연결된다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8년 미국 해군의 해양조사선 Pueblo호를 불법으로 나포한 북한이, 이 선박이 그들의 12해리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간첩활동에 관련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은 이러한 개도국들의 의심을 더욱 조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에 대한 규제의 강화를 반대한 것은 우선 과학자들이었다. 이미 1958년 대륙붕 협약이 1964년에 발효됨에 따라 시작된 과학적 조사활동에 대한 기존의 규제만도 진저리날 정도라고 이들은 생각하였으며,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해양연구 조사활동계획의 제안들을 무산시키게 하거나 조사계획이 채택되더라도 무익하고 지루한 관료적 절차의 장애로 인하여 효과적 실시가 결국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들 과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해양의 과학적 조사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해양이란 본래 하나의 통일된 생태학적 존재이므로 인위적 경계로 그 과학적 조사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주장은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선진해양국가들의 견해로 나타났다.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의 심의과정(審議過程)을 통하여 개도국들의 강경한 규제강화의 주장에 맞선 이러한 선진해양국가들의 주장들은 결국 절충적 형태로 타결되었으며, 1958년 협약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제를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안(海洋法協約案)에 정착시켰다.

가. 일반원칙(一般原則)

모든 국가와 자격 있는 국제조직은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에 규정된 타국의 적법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제238조)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은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관해서 제13장에 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국가와 자격 있는 국제조직은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 그 발전을 고무 증진 시켜야만 한다.(제239조)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에는 다음 원칙이 적용된다.(제240조 및 제241조)

1. 평화적(平和的)목적(目的)의 원칙(原則)

해양의 과학적 조사는 평화적(平和的) 목적(目的)만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다"는 의미는 군사적(軍事的) 응용(應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조사활동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유사한 조항은 [외기권(外氣圈) 협약(協約)]제4조 및 [달 협약(協約)]제3조에서도 발견된다.

2. 수단방법(手段方法)의 적법성(適法性) 원칙(原則)

해양의 과학적 조사는 유엔해양법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타(他) 해양이용활동(海洋利用活動)과의 조화(調和)

해양의 과학적 조사는 다른 적법한 해양이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반면에 그 다른 해양 이용 활동도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4. 해양환경보호(海洋環境保護), 보존조항(保存條項)의 준수(遵守)

해양의 과학적 조사는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협약상의 관련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청구권(請求權) 주장(主張)의 배제(排除) (제241조)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전개된 해양환경이나 그 조사활동의 대상이 된 해양자원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그러한 청구권 주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영해내(領海內)의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查)

타국의 영해내(領海內)에서의 해양과학적 조사활동(調查活動)은 그 연안국(沿岸國)의 동의(同意) 하에 그 연안국이 설정한 규제와 조건에 따라서만 수행되어야 한다.(제245조)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수구역(inter water)에서의 활동도 연안국의 주권적 재량권(載量權) 하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1958년 영해협약(領海協約)과는 달리 무해통항(無害通航) 중 항해에 부수적인 형태로의 조사행위가 불가(不可)한 것은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9조 2항 J호) 국제해협인 영해내에서의 과학적 조사활동도 연안국의 명시적인 사전허가 없이는 불가하다.(제40조) 군도수역 해로통항(海路通航)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제54조)

다.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1. 연안국의 동의권(同意權)과 규제권(規制權)

협약은 기본적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의 규제에 관해 1958년 대륙붕 협약 제5조 8항의 꼴격을 따르고 있다.(제246조) 그러므로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46조 2항 대륙붕협약 제5조 8항 제1문장)

협약은 "순수한 목적"의 조사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회피하고 있지만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순수한 목적"의 조사와 "응용적 목적"의 조사를 구별하던 방식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셈이다. 즉 제246조 3항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만을 위하고,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해양환경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증진하기 위한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바, 이는 대륙붕협약 제5조 8항의 "순수한 목적"의 조사라는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순수한 목적의 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연안국은 "통상적인 상황에서" 동의를 부여하여야만 한다. 1958년 대륙붕협약보다 개선된 규정이라면 연안국의 동의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와 절차를 연안국은 미리 정해 놓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제246조 제5항에는 ① "...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중요성이 있는 조사" ② "대륙붕의 굴착(掘鑿) · 폭발물(爆發物)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海洋還境)에 유해한 물질을 도입하는 조사" ③ "인공도서(人工島嶼) 시설 및 구조물(構造物)을 건조운영 사용하는 조사"를 분류해 놓고 있는바, 이들은 1958년 대륙붕협약상의 소위 응용적(應用的) 목적의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응용적 목적의 조사에 관하여 연안국은 그 동의(同意)를 부여 할 것인가의 여부

에 관해 완전한 재량권(載量權)을 갖는다.(동 제5항) 또, 연안국이 완전한 재량권을 갖게되는 다른 경우로는 해양과학조사국(海洋科學調查國)이 연안국(沿岸國)에 대한 정보제공의무(情報提供義務)를 해태(懈怠)하거나 조사국(調查國) 및 자격 있는 국제조직이 이전(以前)의 조사계획으로 연안국에 현저한 의무를 미이행(未履行)하고 있을 때이다.(246조 5항(b))

연안국은 응용적 목적의 조사 및 제246조 5항(d)의 경우에 갖는 해양과학조사 신청의 동의에 대한 완전재량권의 존부(存否)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제287조의 강제적(強制的) 사법절차(司法節次)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거 제5부속서 소정의 강제조정(強制調停: obligatory conciliation)에 부탁될 뿐이다.(제12장 2의 (2) 참조)

대륙붕협약에 비하여 순수한 목적의 조사와 응용적 목적의 조사에 대한 구별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서는 더 잘 정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안국이 당연히 동의를 부여해야 할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의 범위도 좀더 구체화된 셈이다. 협약은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 연안국이 동의를 한 것으로 의제 할 수 있는 소위 [묵시적(默示的) 동의(同意)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의 경우이다.

첫째, 연안국이 조사수행국(調查遂行國)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도 4개월 이내에 ① 동의(同意)의 유보(留保) 부여 ② 정보(情報)의 부정확(不正確) 또는 오류(誤謬)의 지적 ③ 정보의 보충설명(補充說明) 요구 ④ 조사국(調查國)의 현저한 이행의무(履行義務)의 잔존 등을 통보함으로써 응답치 않는 경우는 그 정보제공일(情報提供日)로부터 6개월 후부터 연안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 된다.(제252조)

둘째, 연안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또는 연안국과 양자조약을 체결한 국제기구가 그 연안국의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연안국이 계획통보를 받고 4개월 내에 응답치 않는 경우에도 그 계획대로 연안국이 조사를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47조)

순수한 목적의 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동의의무와 관련한 소위 "통상적 상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1958년 대륙붕조약 보다 개선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제246조 제4항에서 순수한 목적의 조사에 관한 연안국의 동의에 관하여 그 연안국과 조사국간의 외교적 관계가 없는 것이 "통상적 상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규정으로 밝히고 있을 뿐이다. 생각건대 일반적으로 "통상적 상황"이란 연안국과 조사국간에 무력적 적대관계가 진행중이거나 심각한 긴장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항상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사국(調查國)의 의무(義務)

타국의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사국은 그 연안국에 대하여 몇 가지의 의무를 진다.

가) 정보제공(情報提供)의 의무(義務)

조사국은 과학적 조사계획이 시작되기전 적어도 6개월 전에 ① 계획의 목적, 성질 ② 선박의 명칭, 톤수, 유형, 등급 등 조사수단과 과학장비 ③ 조사구역 ④ 시작과 종료일 ⑤ 조사기관, 후

원기관, 계획책임자의 성명 ⑥ 연안국의 참여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48조)

나) 연안국(沿岸國)조사활동참여(調查活動參與) 보장의무(保障義務)

조사국 및 국제조직은, 연안국이 희망할 경우에는, 연안국으로 하여금 해양과학조사활동(海洋科學調查活動)에 참여케 하거나 해양과학조사계획(海洋科學調查計劃)에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249조 1항(a))

다) 조사결과보고(調查結果報告)의 제공의무(提供義務)(제249조 1항 (b)-(e))

조사국 및 국제조직은, 연안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의 예비보고와 결과보고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 조사활동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결론은 연안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사된 자료와, 손상 없이 분할 될 수 있는 견본을 분할하여 연안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연안국(沿岸國)부여조건(附與條件)의 이행의무(履行義務)

순수한 목적의 조사에 관하여 연안국은 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칙과 절차를 확립해야 하고, 과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제246조 3항) 그러나 응용적 목적의 조사에는 각종의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조사국은 이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제249조 2항)

마)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主權的權利) 및 관할권 행사준중(管轄權 行事停重)의 의무
해양의 과학 조사활동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적법한 관할권 행사에 따라 연안국이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저해할 수 없다.(제246조 8항)

3. 200해리 이원(以遠) 대륙붕(大陸棚)에서의 조사활동(調查活動)

응용목적의 조사인 경우라도,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에서의 조사활동에 대하여는 연안국은 동의유보재량권(同意留保裁量權)이 없다. 다만 개발탐사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일정구역을 특정구역으로 공표한 경우에 이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유보재량권이 있다. (제246조 제6항)

4. 조사활동(調查活動)의 정지(停止) 및 중지(中止)

타국의 대륙붕 및 경제수역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국이 연안국에 통보한 각종 정보자료대로 조사가 수행되고 있지 않거나 조사국이 연안국의 조사활동참여를 보장하고 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각종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연안국은 그 조사활동(調查活動)의 정지(停止)를 요구(要求)할 수 있다.(제253조 1항) 연안국(沿岸國)의 정지명령(停止命令)은 조사국이 그 정보제공의무 및 기타 조사국 의무를 이행하며 조사활동을 이행하여 시정하는 즉시, 연안국에 의해서 해제되어야 하며, 조사활동은 계속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제253조 5항)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을 해태(懈怠)하거나, 연안국이 조사를 요구하게 된 사항의 시정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조사활동의 중지를 요

구할 수 있다.(제253조 2,3항) 중지명령을 통고 받은 조사국은 그 조사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제253조 4항)

라. 공해(公海)에서의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查)

공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은 공해사용자유(公海使用自由)의 내용으로 명백히 규정되고 있다.(제87조) 협약상 연안국의 대륙붕 이원의 공해해저(公海海底)와 그 하층토(下層土)는 소위 국제해저지역(國際海底地城: The Area)으로 정의된다.(제1조 1항) 이러한 국제해저지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오직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전체로서의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제143조 1항) 국제심해저기구(國際深海底機構: ISBA)는 국제해저지역(Area)에서의 조사활동을 주관한다. 즉 ISBA는 조사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역(Area)내의 조사의 수행을 고무 증진하고, 그 조사결과를 분석·전파하여야 한다.(동 제2항)

협약의 당사국들도 지역(Area)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동 제3항)

마.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查) 시설(施設) 및 장비(裝備)

해양과학조사를 위해서는 각종 고정구조물(固定構造物)의 설치나 부이 등 해상부유장치(海上浮游裝置)의 설비가 필요하다. 이들 해양자료수집기기(海洋資料收集器機: ocean data acquisition system : ODAS)들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1960년대에 이미 UNESCO의 IOC와 IMO등이 주동이 되어 연구·검토되어 왔다. 이 결과는 [해양자료수집기기에 관한 법적 문제]라는 제명으로 1969년에 발간된 바도 있다. 또 이와 관련된 협약이 기초되었으나 제3차 유엔 해양법협의에서 이 문제를 종합하여 타결하도록 결정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1982년 해양법협약 제13장 제4절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해양자료수집기기(ODAS)의 법적 지위와 그 사용에 관한 조건은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의한다.(제258조)

그러므로 영해(領海)와 군도수역(群島水域)에 있어서 이들 ODAS의 설치와 사용은 연안국의 사전동의와 규제에 의한다. 대륙붕 및 경제수역에 있어서 인공도서, 시설 또는 구조물인 ODAS의 설치와 사용에 관련되는 조사활동은 그 목적이 순수한 학술적인 경우라도 소위 응용적 조사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제246조 5항 (c)) 오로지 연안국(沿岸國)의 동의유보재량권(同意保留載量權)에 복(服)하게 되며, 또 이를 인공도서·시설 또는 구조물의 형태를 갖는 ODAS는 연안국의 배타적(排他的) 관할권(管轄權)에 속하게 된다.(제250조, 제80조) 그러나 인공도서, 시설 또는 구조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해양조사기기들이 "순수한 목적"의 조사에 활용되는 경우에 연안국은 이들의 설치 및 사용에 부당한 규제나 거부조치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ODAS의 설치국(設置國)은 그 설치물(設置物)에 대해 함선에 대한 기국의 관할권과 같은 것을 갖는 것으로 일용 의제(擬制) 된다. 그러나 적어도 타국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

제수역 내에서는 위와 같은 강한 제약을 받는다. 공해에 있어서도 설치국의 기국관할은 완전히 인정되며, 이는 조사활동이 상충수역이나 해저 하층토의 어디에서 수행되든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들 시설장비 및 기기는 도서(島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그 자체의 영해(領海)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물론, 영해·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大陸棚)의 경계획정(境界劃定)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59조) 설치국은 과학조사시설 주위에 500m를 넘지 않는 폭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안전수역은 모든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한다.(제260조) 그러나 설치국은 이러한 장비나 시설을 중요 국제해운항로(國際海運航路)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제261조) 특히 이들 시설과 장비에는 등록국(登錄國) 또는 소속 국제기구(國際機構)를 나타내는 식별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항해 및 비행안전을 위한 경고표식도 부착하여야 한다.(제262조)

협약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ODAS에 관련된 규정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IOC와 IMO에서는 이들 규정을 보완하는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실되어 타국관할권내에서 발견되는 회수된 ODAS에 관한 문제, ODAS의 활용을 불법으로 침해한 경우의 책임과 배상문제, ODAS의 기국에는 등록 및 안전규정문제 등이 제4절의 미비 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바. 해양과학조사(海洋科學調查)를 위한 국제협력(國際協力)

협약의 과학조사 활동은, 초기에는 민간연구기관이 주도하였으나 차츰 규모와 내용이 확대 발전됨에 따라 각 국가가 국가적 계획에 의해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해양이란 본래 하나의 통일된 생태학적 존재이고 더구나 해양이용활동 자체가 모든 면에서 단위 국가의 관련범위를 넘어 국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대의 해양과학조사 활동에는 국제적 협력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협약 제13장에서는 국제협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국가는 주권존중(主權尊重)의 원칙(原則)과 상호이익존중(相互利益尊重)의 기초 위에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제242조)

특히 사람의 건강과 안전의 침해 및 해양환경 해손을 방지 통제함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제242조) 모든 국가는 해양과학조사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 시켜서 해양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과정의 본질 및 상호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과학자들의 노력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43조) 모든 국가(및 국제조직)들은 해양과학조사로 획득된 지식과 정보를 발간 배포하며, 특히 개도국의 기술 및 과학인원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계획을 통해 개도국들이 이러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제249조)

이러한 해양과학분야의 국제기구에는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 기구가 있는데, 이 기구들은 주로 개별 국가가 수행할 수 없는 과학조사 분야에 관하여 국제적인 계획 수립과 활동을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이들 기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해양과학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정부간기구로 탄생된 것이 1906년에 설립된 海洋探査
國際理事會(ICES)⁷⁾이다. 이 기구는 북대서양 연안국들에 의하여 발족된 비정치적인 국제과학 기구로서, 북대서양의 해양생물자원·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제시, 각종 해양과학조사 방

법의 개발 등 해양과학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리고 1919년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구인 지중해과학탐사 국제위원회(ICSEM)가 설립되었다. 현재 이들 두 기구의 회원국은 각각 17개국이다.⁸⁾

위의 두 기구와 매우 유사한 성격의 지역기구로서 북태평양해양과학조사기구(North Pacific Science Organization; 별칭 PICES)⁹⁾가 1992년 3월 24일 발족되었고, 현재의 회원국은 미국, 카나다, 일본, 중국, 한국의 5개국이다. 이 기구의 설립목적은 북태평양에서의 해양환경과 그것의 육지 및 대기와의 상호작용, 해양생물자원의 지구기후 변화에 대한 반응과 역할, 해양동식물 및 생태계, 해양자원과 그 이용, 그리고 인간 활동의 영향 등에 관한 과학지식을 항상시키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를 증진하고 조정하며, 해역 내의 과학조사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 기구가 북태평양에서 소하성어류 이외의 수자원에 관한 유일한 국제수산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태평양 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양과학분야의 전문기구로서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는 1960년에 유엔의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내의 자주적인 기구로 설립된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이다. 이 기구의 설립목적은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의 특성과 자원에 관한 보다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양과학조사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며, 유엔 체제내에서 범세계적으로 이 활동에 관하여 조정하고 협력한다.

그외의 유엔 전문기구들 중에서도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수산자원에 관한 해양과학조사를 주관하며,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관측에 관한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1960년대 UNESCO에는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 IOC)가 설립되었던 바, IOC는 "그 체약국(締約國) 요원의 통합된 노력을 통해 해양의 특성과 자원에 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활동을 개선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 海洋科學調査와 관련한 國際責任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주체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존중해야 하며, 해양법과 기타의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조사주체는 필요에 따라 시설물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협약 제258조), 이것들은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또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주위에 500미터 이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제260조), 이

7)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8) Gary Knight and Hungdah Chiu,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Elsevier Science Publishers Co., 1991, p. 756

9) PICES는 Pacific ICES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북태평양에서도 북대서양의 ICES에 필적하는 과학조사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별칭으로 붙여진 것이다. 최종화, 「現代國際海洋法」, (부산:세종출판사), 1999, p. 201, 각주 21

러한 시설물이나 장비가 기존의 국제통항로에 대한 장해를 구성할 수 없으며(협약 제261조), 거기에는 식별표식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고신호를 부탁함으로써 해상안전을 도모해야 한다.(협약 제262조). 조사주체는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해양법 또는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법규를 위반하여 환경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협약 제263조)

협약 제263조 제1항에 따라 각국 및 권한 있는 국제조직은 스스로 수행하는 또는 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가 협약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이는 조사국과 국제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진 海洋科學調查에 있어서, 타국의 권리를 침해한 조사국이나 국제조직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海洋科學調查活動을 수행하는 국가 혹은 국제조직이 협약 상의 타국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와 협약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타국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보상할 의무를 수반한다. 국가와 국제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용하는 선박에 의해 수행되는 기타 조사의 경우와 또한 공공조사연구소나 국제조직에 속해 있는 연구소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조사를 포함한다.

제263조 1항은 또한 국가 및 국제조직을 “대리하여” 수행된 海洋科學調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정부 또는 국제조직과 관련 있는 사설연구소에 의해 수행되는 조사, 예컨대 그러한 연구소가 국가기관 또는 국제조직과의 계약 하에 수행되는 조사는 포함하지만 조사국의 사설연구소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조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263조 2항에 의하여, 각국과 권한 있는 국제기구는 다른 국가나 그 국가의 자연인에 의하여 법인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이 협약을 위반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63조 3항은 조사국 및 권한 있는 국제조직의 타국에 대한 국제법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국 또는 국제조직에 의해서 수행된 海洋科學調查活動으로부터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협약 제235조에서는 국내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약 제304조에서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책임을 두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기준 규칙의 적용과 장래 이러한 규칙의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국제법의 제원칙이 우선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IV. 우리나라와 周邊國의 海洋科學調查法 分析

가. 우리나라의 海洋科學調查活動 沿革

우리나라 근해에 대한 해양조사활동은 1787년 프랑스의 라 페로즈(La Pérouse)가 제주도 남단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세기 말까지 약 100년간에 걸쳐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에 의해 우리나라 전연안에 대한 수심과 수로측량이 이루어져 약 120여종의 해도가 간행되었다.¹⁰⁾ 1946년부터 해

양과학조사 활동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설립, 또는 확대, 개편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정부간해양과학위원회(IOC)에 정식가입하였고, 유네스코 주관으로 1965~1970년에 실시된 쿠로시오 국제공동조사(CSK :Cooperative Study of the Kuroshio)에 미국, 소련 및 일본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해양연구의 국제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1981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양자강으로부터의 담수 배출에 관한 연구와 동중국해에 있어서 퇴적토 형성의 과정에 관한 합동연구”에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자들이 동참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1986년에는 이 연구를 수행하는 탐사선박에 동승하여 한국과 중국의 해양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고, 양국간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¹¹⁾ 이후 1996년 3월 1일부터 1998년 2월 28일까지 황해해저분지의 지질조사가 한국과 중국 해양학자의 합동연구로 실시되었다.¹²⁾ 1987년에는 동해에서 한일간의 해저전선 전압측정을 실시하였고, 동아시아해역공동연구(CREAMS)가 1993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¹³⁾ 여기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 해양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지역의 과학적 조사를 확대하기 위한 CREAMSⅡ가 成案되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될 계획이다.¹⁴⁾ 한국해양연구소는 하와이대학과 미국 지질조사소와 공동으로 태평양 심해저 광물탐사사업을 추진하였고, 1988년에는 남극반도의 킹조지 섬에 한국남극과학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남빙양 연구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동해 및 동중국해 조사계획(Japan and East China Sea Study : JECSS)은 1981년 Texas에 있는 A & M University의 이찌에 교수가 시작하였다. 이는 조사자료, 과학적 연구 및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동해와 동중국해 및 그 인접 수역에 대한 합동 조사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적인 회의로 기획되었다.¹⁵⁾ JECSS를 통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해져서 이 동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이제 양자간 합동 조사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많은 합동 조사가 이 JECSS 계획의 일환으로 성사되었다. JECSS의 기본적 방침은 융통성, 생산성 그리고 비공식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지난 17년간의 실적에서 그 장점이 잘 입증되고 있다. 동북아의 연변에 발달된 연속적인 반폐쇄해들에서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JECSS의 연구 활동 범위를 동해, 동중국해에 국한하지 않고 남으로는 남중국해를 포함하고 북으로는 오헤츠크해와 베링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활동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의 결과 JECSS는 아시아 태평양연안해 연구계획(Pacific-Asian Marginal Seas :PAMS)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¹⁶⁾

현재 한국은 세계해양순환실험(WOCE), 열대해양-대기연구(TOGA), 전세계해양관측시스템

-
- 10) 허형택,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김진현·홍승용 編著, 「해양21세기」 (나남출판사, 1998), p. 589
- 11) Kuh Kim,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Northeast Asia: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 *Ocean Affairs in Northeast Asia and Prospect for Korea-China Maritime Cooperation*,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East and West Studies Series 32. (1994), p. 157
- 12) 김영구 외, “반폐쇄해 내에서의 어업과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연안국들의 협력 방안 -동해와 황해를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논총 43권 제1호(1998년 6월), p. 133.
- 13) Kuh Kim, *op.cit.*, p. 158-159.
- 14) 김영구, 앞의 논문, p. 133.
- 15) Kuh Kim, *op.cit.*, p.159-160.
- 16) 김영구 외, 앞의 논문, p.134.

(GOOS), 세계해양물질순환연구(JGOFS), 파이시스-글로벡(PICES-GLOBEC)사업, 동아시아해역공동연구(CREAMS), 북태평양환경계획(NOWPAP), 황해광역생태계(YSLME)사업등 국제해양조사연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주변국의 해양과학조사제도를 분석하여 앞으로 海洋科學調查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의 보완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 韓國의 海洋科學調查法 및 其他 關聯法律

1. 韓國 海洋科學調查法의 基本的 內容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조사법은 총 3개장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제3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법의 적용대상해역은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하지만,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하여는 내수를 제외한 기타 수역에 한정함으로써 내수에서의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⁷⁾ 법의 적용대상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동 법 제2조 제1호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해양의 자연현상을 구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규정의 해석상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주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조사 또는 탐사의 용어사용은 원격탐사와 같이 해양과학조사의 수단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용어의 혼란을 포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태도로 해석된다.¹⁸⁾ 海洋科學調查法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양과학조사가 수행되는 해역별로 외국인이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영해에서 외국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과학조사 실시예정일 6월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영해외측의 관할해역 즉,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월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²⁰⁾ 한편 동의 거부사유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 제5항이 4개 사유를 수용하였으며, 이밖에도 대한민국의 국민 및 국가기관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 바²¹⁾, 이것은 국제법상의 상호주의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외국인등이 우리나라의 영해, 영해외측의 관할해역과 우리 국민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때, 외국인 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²²⁾

17)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및 제7조

18) 이용희 외,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범과 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3권2호(통권 84호), 1998, p.176.

19) 동법 제6조 제1항, 제2항, 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0) 동법 제7조 1항, 2항

21) 동법 제7조 4항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사유로는 첫째, 외국인 등이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둘째, 외국인등이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외국인 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한편,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의 없이 대한민국 영해 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당해 선박·설비·장비 및 얻어진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

2. 其他 關聯法律의 規定

가) 海洋開發基本法과의 관계

해양개발기본법²⁵⁾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법률이다.(제1조). 이 법률은 해양의 생물자원(제6조), 광물자원(제7조), 에너지 자원(제8조), 공간자원(제9조) 등의 개발·이용과, 해양환경의 보전시책을 강구하는 것(제10조)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조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국가시책을 강구하고(제5조), 구체적으로 연구기관의 설립·육성(제17조), 해양과학교육의 강화(제18조), 정보유통의 원활화(제19조), 공동연구의 촉진(제20조), 국제협력의 증진(제2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고학조사법은 해양개발기본법의 과학조사와 기술개발분야에 대한 국가정책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규범이다.

나) 領海 및 接續水域法과의 관계

영해는 영토와 더불어 최고성과 독립성을 갖는 국가주권이 작용하는 주권영역이며, 한국은 이 영해를 법적으로 수호하기 위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²⁶⁾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 행사조건으로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조(무해통항의 의미)를 수용하였고(법 제5조 2항), 그 조건의 하나로서 “조사 또는 측량”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5조 2항은 “조사 또는 측량”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승인·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기 때-

22) 동법 제10조 2항

23) 동법 제11조

24) 동법 제19조

25) 1987. 12. 4., 법률 제3983호

26) 1997. 12. 31 법률 제3037호로 영해법 제정, 1995. 12. 6 법률 제4986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

문에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영해에서의 허가)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저촉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 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활동이 영해주권수호문제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당연히 우선한다.

다) 排他的 經濟水域法과의 關係

1996년에 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률이다.(제1조) 따라서,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연안국으로서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합당한 조치이다.(제3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우리나라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1조에 의한 追跡權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선명령·승선·검색·나포 및 司法節次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 3항)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와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해양과학조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²⁷⁾ 해양과학조사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공히 유엔 해양법협약의 규정을 국내법으로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국제법적인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관할권의 행사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 周邊國의 海洋科學調査 關聯法의 分析

1. 日本

일본은 1996년 6월 20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동년 6월 14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정하여 신해양질서에 따른 해양관할권제도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제도로는 1996년 7월 20일자 국가관할하의 지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²⁸⁾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에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행하여지는 해양과학조사의 경우에는 자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²⁹⁾ 한편, 1996년에 제정된 지침에서는 일본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외국 국민이나 기관은 일본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최소한 조사활동 실시 예정일 6월 전까지 일본 외무성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공식적인 동의요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7) 최종화, 앞의 책, p. 215.

28) U.N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Bulletin, No.33.(1997), pp 38-44

29) 외무부, “동북아제국의 해양법령”, 1996년 12월, p. 224

조사사업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해양동물이나 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탐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³⁰⁾에 의해 일본의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³¹⁾. 신청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일정한 신청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영해에서 해양동물 및 식물의 포획 및 채취는 외국국민의 어업운용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승인 받을 수 없다. 동 지침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구별하여 명시적 동의 및 동의로 구분하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과는 달리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의요청 시한도 6월로 협약상의 조건과 일치한다. 그러나 동의요청이 있은 후 이에 대한 가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동의요건,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에 대한 규정, 벌칙조항 등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의 해양과학조사제도가 상기한 바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일본이 1996년 6월 20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한 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의 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³²⁾ 제3조에 의해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

2. 中國

중국은 1996년 6월 21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92년 2월 25일 영해 및 접속수역 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6월 26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중국 제9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정함으로써 중국의 해양관할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완비하였다.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법제도로는 1996년 6월 18일 선포되어 1996년 10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이 중국 국무원령 제199호로 선포된 바 있다. 먼저,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1조에서 자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국제조직은 중국 정부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중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³³⁾. 또한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9조에서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외국인 및 국제조직이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위 법의 제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으로서 제정된 섭외해양과학연구관리규정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관할수역내에서 진행되는 섭외 해양과학활동의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과학연구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국가안전과 해양권익을 준수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³⁴⁾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제조직 및 외국의 조직과 개인(이하 외국인)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단독 또는 중국의 조직(이하 자국민)과 협력하여 선박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운송수단이나 설비로 중국의 내수, 영해를 포함하는 자국의 관할해역 내에서 전개되는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자원 등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이다. 그러나 해양광물자원(해양석유자원포함)탐사, 해양어업자원과

30) 평성 8년 법률 제76호. 외무부, 앞의 책, p. 231.

31) 동법 제8조~10조, 외무부, 앞의 책, p. 233~234.

32) 평성 8년 법률 제74호. 외무부, 앞의 책, p. 224

33) 외무부, 앞의 책, p. 281.

34) 동규정 제1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해양 야생 동식물 연구 등의 활동은 중국의 관련법률과 행정법 규를 적용하도록 하여 동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³⁵⁾

동 규정에 따르면 내수와 영해 안에서 외국이 수행하는 해양과학연구활동은 반드시 공동조사 연구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국 관할아래 있는 기타 해역 안에서는 단독 또는 공동조사 연구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³⁶⁾ 그리고, 공동연구시 중국측 조사자가 조사예정일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³⁷⁾ 이 때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해양과학연구 신청서 접수후 반드시 외교부와 의논하고 군사주관부서,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가 심사하여 4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가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국무원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동규정은 우리나라의 해양조사법 제7조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과 유사하다. 그리고 허가된 섭외 해양과학연구활동의 신청인은 반드시 매 항해개시 2월전에 해상 선박활동 계획을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해상선박활동계획을 접수한지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가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³⁸⁾ 그리고, 해양과학연구계획 또는 해상선박활동계획의 진행과정 중 중요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의 정식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해양환경에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임의로 굴착하거나 또는 화약작업을 금지하고 있다.³⁹⁾ 그리고 조사요건으로 내수 및 영해 내에 해양과학연구활동을 진행할 경우 작업선박은 그리니치시간으로 매일 00시와 08시에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선박위치와 활동정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역에서 해양과학연구활동을 진행할 경우에 작업선박은 그리니치시간으로 매일 02시에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선박위치와 활동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⁴⁰⁾

또한 동규정의 특징적인 사항은 조사활동에서 얻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의 명시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중국 내수와 영해에서의 공동조사에서 획득한 자료와 시료는 중국의 소유이며, 공동연구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공동약정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해역에서 공동연구활동에서 획득한 자료와 시료는 중국의 관련조직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반드시 국가해양주관부서에 획득한 자료의 복사본과 분리 가능한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⁴¹⁾ 그리고 공동연구후 내외국인은 반드시 연구성과와 자료목록초본을 국가해양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해양과학연구활동 종료후, 반드시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에 활동의 결과에 따라 취득된 자료 또는 복사본과 시료 또는 분리 가능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간에 따라 중간연구성과와 최종연구성과와 결론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⁴²⁾

그리고, 본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해당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기기와 획득된 자료를 몰수

35) 동규정 제2조

36) 동규정 제4조

37) 동규정 제6조

38) 동규정 제6조

39) 동규정 제8조

40) 동규정 제9조

41) 동규정 제11조

42) 동규정 제12조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또는 상기 조치와 아울러 5만원 인민폐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본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혔거나 또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와 범죄행위가 될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³⁾

3. 北韓

북한의 해양과학조사법은 단일법제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의 제3장에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의 과학연구라는 표제로 규정되어 있다. 동 법은 북한 정무원 결정 제160호로 승인된 것으로 1978년 8월 12일 공포되어 198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동규정은 제4개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붙임표가 5개이다. 동규정은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1977년 6월 21일)를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수역에서 수자원을 비롯한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적극 개발, 이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⁴⁾

동규정 제3조에서는 북한정부가 자국 경제수역에서의 과학연구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행사하며, 외국인, 외국배, 외국비행기는 자원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수역에서 과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경제수역에서 과학연구를 하는 외국기관과 사람은 바다환경의 어느 부분이나 자원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⁴⁵⁾ 북한의 승인(협정, 계약, 인가)을 받고 경제수역에서 과학연구를 하려는 외국인, 외국배, 외국비행기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과학연구신청서 3부를 북한공용어와 국제공용어로 작성하여 1월전에 자원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수역에서 과학연구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할 때 해당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⁴⁶⁾ 또한 동 조사활동에서 얻은 이익과 자료를 북한의 해양과학연구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해양과학연구기관의 동의 없이 공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⁷⁾ 한편, 과학연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는, ① 생물 또는 비생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진행할 때, ② 굴을 뚫거나 폭발물을 쓸 때, ③ 북한의 해양경제활동에 간섭할 때, ④ 북한의 안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⁴⁸⁾ 동규정과 해양과학연구와 관련한 북한의 법규를 어겼을 때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⁴⁹⁾

V. 우리나라 海洋科學調查法의 問題點

가. 用語定義의 適正性 問題

43) 동규정 제13조

44) 동규정 제1조

45) 동규정 제24조

46) 동규정 제27조

47) 동규정 제28조

48) 동규정 제29조

49) 동규정 제30조

1. 法人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2항에서의 “외국인”의 정의 가운데, “법인”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비록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管轄海域의 範圍

제2조 4항에서는 “관할해역”의 범위 내에 내수와 영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법협약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내수와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국제법상 주권과 관할권은 엄연히 법적 의의를 달리하는 개념이므로, 이것을 동일시하는 법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할해역의 범위에서 내수와 영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適用範圍의 問題

동법 제3조에서는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등이 수행하는 海洋科學調查의 대상에 어업 생물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1958년 해양법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이 채택된 이래 생성된 어업 자원 보존수역의 개념은 해양과학 조사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업 자원 보존 수역을 설정한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그 수역에서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 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는 비록 그것이 순수한 조사목적이라 할지라도 바로 수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을 주장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 5항에서는 다른 국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행해지는 해양과학조사가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과학조사법 제7조 4항 2호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의규정과 어족자원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외국인 등에 의해 행해지는 어족자원의 개발 및 탐사에 관하여도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外國人 등에 의한 領海에서의 海洋科學調查 排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해역이다. 이러한 면에서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이러한 법적 성질의 차이로 인해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협약 제245조, 협약 제246조) 협약 제245조에서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완전한 재량권 하에 둔 반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있어서는 순수한 과학적 목적의 해양과학조사에는 동의를 하되, 응용적 조사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수용하여 영해와 영해외측의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규정한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와 7조, 시행령 2조 및 제3조는 조문상 허가와 동의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절차는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해양과학조사의 진흥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자국의 해양안보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영해에서 외국인 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는 내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에 의해 공동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한 외국인 등은 이러한 자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外國人等의 義務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각국과 국제기구는 협약상 특정한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협약 제249조) 이러한 의무중 연안국이 희망할 경우 조사사업에 참여할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 연안국 과학자에 대한 보수지급이나 조사사업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과학조사법 제10조에서 이러한 참여자의 보수와 조사비용부담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은 해양과학조사 수행시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해양과학조사활동의 국제교류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동법 제9조에서 조건부 허가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협약 규정과 대치되는 비용부담의 명시적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海洋科學調査와 關聯된 權利의 發生 不認定

협약 제241조에서는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수용한 해양과학조사법 17조에서는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이란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해양과학조사 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조사자료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권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자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 하겠다.

VI. 結論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법상 제도는 1958년 대륙붕협약 제5조에 일정범위의 과학조사를 연안국의 동의제도에 두면서 처음 시작되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3장에 해양과학조사제도를 입법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과 선진해양국간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타협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이 갖는 의의는 연안국에 의한 해양관할권이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연안국의 관할해역에서의 과학조사를 국가 이익과 더불어 인류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영해에서의 과학조사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실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와 연안국이 정한 조건에 따라 과학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⁰⁾ 물론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지만⁵¹⁾, 영해에서 외국선박이 조사활동 또는 측량활동을 행한다면 무해통항으로 볼 수 없다.⁵²⁾ 또한 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으로서 항행의 안전을 위해 수심, 풍속, 풍향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영해에서 과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연안국은 해양의 과학조사 및 수로조사에 관하여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⁵³⁾ 무해통항권을 행사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⁵⁴⁾. 한편, 국제해협에서도 통과통항중의 외국선박은 해협연안국의 사전 허가 없이 여하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도 행할 수 없으며⁵⁵⁾, 무단으로 과학조사를 행했다면 통과통항으로 볼 수 없게 된다.⁵⁶⁾

둘째, 동협약에는 군도수역에서 과학조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군도국가의 주권이 군도수역에 미치는 이상⁵⁷⁾, 군도국가는 이 수역에서 과학조사를 규제, 허가 및 실시할 주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군도항로대에서 과학조사는 군도국가의 사전허가를 획득함과 동시에 군도국가가 정한 조건에 의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⁵⁸⁾. 또한 외국선박이 군도수역에서 무단으로 조사활동을 행한다면, 이를 무해통항권의 행사⁵⁹⁾ 또는 군도항로대 통항권의 행사⁶⁰⁾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의 과학조사를 연안국의 관리하에 두려고 하는 개발도상 국가들과 자원탐사에 관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종류의 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는 해양국가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지만 협약규정에는 그 타협의 결과로서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서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에 의해 행해진 해양과학조사에 대해서는 이 협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견해의 대립으로 협약에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연안국과 조사국사이에 분쟁이 발생

50) 유엔해양법협약 제245조

51) 동협약 17조

52) 동협약 제19조 제2항 (j)

53) 동협약 제21조 제1항(g)

54) 동협약 제21조 4항

55) 동협약 제40조

56) 동협약 제38조 2항

57) 동협약 제49조 제1항

58) 동협약 제54조

59) 동협약 제52조 제1항

60) 동협약 제54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의해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과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⁶¹⁾

넷째, 공해에서의 과학조사는 공해에서 과학조사와 심해저에서 과학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우선,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조직은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²⁾ 협약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해역은 공해가 되며⁶³⁾, 이곳에서 과학조사를 하는 것은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협약상 공해의 자유는 제6장 및 제13장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학조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⁶⁴⁾ 다음으로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조직은 제11장의 규정에 따라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한다.⁶⁵⁾ 그래서 제11장에서 심해저에서 과학조사가 제13장의 규정에 의해 오로지 평화적 목적 및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 국제해저기구가 스스로 심해저와 그 자원에 관한 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또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조사 및 분석결과를 조정하여 보급되게 하는 것 및 체약국이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점에서 동 규정은 공해에서 해양과학조사와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법제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2. 그러나,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는 기술상으로 매우 복잡한 해양과학조사제도를 규율하기에는 보다 더 분명하고 상세한 규정이 필요한데 협약상의 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많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그 결과,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한 ODAS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향후 각국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해양법질서의 개편에 따라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법을 통하여 해양개발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3. 현재 한·중·일·북한 모두 영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한·일, 한·중, 중·일 국가 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이 타결되어 신국제해양질서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들간의 본격적인 해양과학조사실시나 다자간 해양자원분배에 관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유엔해양법 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용한 해양과학조사법 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입법을 완비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법적용의 형평성이 결여된다면, 기대했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해양에서의 평화적인 해양질서

61) 동협약 제59조

62) 동협약 제256조

63) 동협약 제86조

64) 동협약 제87조 제1항(f)

65) 동협약 제256조

66) 동협약 제256조

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국간의 공동해양과학조사와 이를 규율하기 위한 각국의 해양과학조사법 제도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주변국간의 표준화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参考文獻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부산 : 효성출판사), 1999
- 최종화, 「現代國際海洋法」, (부산:세종출판사), 1999
- 김영구 외, “반폐쇄해 내에서의 어업과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연안국들의 협력 방안 -동해와 황해를 중심으로-” 대한국제법학회논총 43권 제1호(1998년 6월)
- 이용희 외,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제규범과 주변국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43권2호(통권 84호), 1998
- 허형택,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김진현·홍승용 編著, 「해양21세기」 (나남출판사, 1998)
- 외무부, “동북아제국의 해양법령”, 1996년 12월
- Churchill R. R. A.V Lowe,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Press, 1999.
- Gary Knight and Hungdah Chiu,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Elsevier Science Publishers Co., 1991
- Kuh Kim,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Northeast Asia: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 *Ocean Affairs in Northeast Asia and Prospect for Korea-China Maritime Cooperation*,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East and West Studies Series 32. (1994)
- Soons, A.H.A.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Law of the Sea*(The Hague, 1982).
- Turio Treves, “Marine Research”,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11,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89.
- U.N Office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Bulletin, No.33.(1997)